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136호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창원시 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수산업법」 전부개정 및 「양식산업발전법」 분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양식장형망선의 적정한 척수 등을 정한 「창원시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는 그 근거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창원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현행: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 변경: 창원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제4조)

다.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함(안 별표)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은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6
----------	-----

발의연월일 : 2023. 11. 17.

발 의 의 원 : 오은옥 · 권성현 · 김경희 · 김남수 · 김묘정
김상현 · 김우진 · 문순규 · 박강우 · 박해정
백승규 · 서영권 · 심영석 · 이우완 · 이원주
이종화 · 전홍표 · 정순욱 · 진형익 · 최은하
한상석 · 황점복 의원(22명)

1. 제안이유

「수산업법」 전부개정 및 「양식산업발전법」 분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양식장형망선의 적정한 척수 등을 정한 「창원시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는 그 근거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창원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현행: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 변경: 창원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제4조)

다.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함(안 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나. 현행 조례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창원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와 그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어장 관리 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

제3조(관리선의 정수) 관리선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톤수의 동력어선’이란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양식장형망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원시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받은 양식장형망선은 기간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 받은 관리선은 기간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 창원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관리선의 정수(제3조 관련)

구분	어업/양식업의 종류	관리선의 정수
해조류양식업	수하식양식	- 5ha 이하 1척, 5ha 초과마다 1척
패류양식업	수하식양식	- 5ha 이하 1척, 5ha 초과마다 1척 - 바닥식 양식장에 양식장형망선(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은 수면별로 1척
	바닥식양식	
어류등양식업	가두리양식	- 0.5ha 초과마다 1척
	수하식양식	- 5ha 이하 1척, 5ha 초과마다 1척
협동양식업	-	-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의 정수 기준에 따름
정치망어업	-	- 3척 이하
마을어업	-	- 1개 어촌계에 3척 이하 - 양식장형망선(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은 수면별로 1척
구획어업	건강망어업	- 1척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해선망어업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정치망어업 관리선은 공유지분권자별마다 1척을 사용할 수 있다. 2.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행사계약을 통해 어장 또는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사자마다 1척을 사용할 수 있다. 3.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운반이나 오물청소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리선 사용승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 정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업·양식업·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장(漁場)”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7. “어업권”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 20. (생략)

제7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지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또는 포획방법·채취방법
3.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6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馬力)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定數)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시행령

- 제14조(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장의 관리 효율성과 어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어선 중 양식장형망선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해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마을어업 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그 어선을 대체하여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14조제2항 관련)

어업의 종류	대상 지역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마을 어업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양식장형망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장형망선, 자원관리채취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비고

1. “양식장형망선”이란 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
2. “자원관리채취선”이란 잠수기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관리선의 규모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③ 법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한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 종류별·어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관리선의 규모(제21조제1항 관련)

1. 면허어업

어업의 종류	관리선의 규모
가. 정치망어업	총톤수 30톤 미만인 동력어선
나. 마을어업	총톤수 20톤 미만인 동력어선

2. 구획어업

어업의 종류	관리선의 규모
가. 건강망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총톤수의 동력어선
나. 건망어업	
다. 들망어업	
라. 선인망어업	
마. 승망류어업	
바. 안강망어업	
사. 장망류어업	
아. 지인망어업	
자. 해선망어업	

■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양식장”이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양식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제10조(양식업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해조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패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 어류등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복합양식업: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업 대상품종을 두 종류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5. 협동양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

하는 사업

6. 외해양식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7. 내수면양식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양식장 구역의 한계 및 양식장 사이의 거리

2. 양식수산물의 포획·채취방법

3. 양식방법에 관한 사항

4. 양식장의 시설 기준, 어선·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유해생물 구제도구의 종류·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면허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양식업권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양식업권자(제38조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면허권자는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의 종류와 양식장의 면적 또는 양식수산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과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어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양식업권자는 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을 면허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양식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을 지정받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그 사용을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양식장 외의 수면에서 그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관리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

항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 마력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양식장에서 관리선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① 면허권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장 관리의 효율성과 양식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어선 중 양식장형망선은 바닥식양식업의 양식장에 한정하여, 자원관리채취선은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지정·승인해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의 관리선 또는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이를 대체하여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28조제2항 관련)

어업	지역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1. 해조류양식업, 외해양식업	전국	「어선법」에 따른 어선
2.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가. 양식장형망선(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가. 양식장형망선 나. 자원관리채취선(잠수기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다.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관리선의 규모 등)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외의 관리선의 양식업 종류별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 : 총톤수 30톤 미만
2. 외해양식업 : 총톤수 제한 없음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선의 양식 방법별, 양식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는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한다.

■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척수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별표】

창원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제2조 관련)

어업종류	어업방법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비 고
해조류양식	수하식양식	• 5ha 이하 1척, 5ha 초과마다 1척	※ 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을 추가할 수 있음.
패류양식어업	수하식양식	• 5ha 이하 1척, 5ha 초과마다 1척	
	바닥식양식		
어류등양식어업	가두리양식	• 0.5ha 초과마다 1척	
	수하식양식	• 5ha 이하 1척, 5ha 초과마다 1척	
정치망어업	정치망어업	• 3척이내	
마을어업	마을어업	• 1개 어촌계에 3척 이내 지정	
수협 어촌계양식장 협동양식장	-	• 행사 계약자마다 1척	